

수원지방법원 2019. 2. 21 선고 2018나55647 판결 [압류등기말소의 소]

전 문

원 고

유AA

피 고

대한민국

변 론 종 결

2018. 12. 18.

판 결 선 고

2019. 2. 21

원심판결 2017. 9. 13. 선고 2017가단505847 판결

주 문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원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[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.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, 입증할 책임이 있고(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), 위와 같은 법리는 무효인 행정처분이 판단의 선결문제로 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, 제1심판결과 당심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]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